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43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민형배 · 이개호 · 안도걸
주철현 · 김동아 · 김용민
박지원 · 위성곤 · 양부남
김문수 · 정동영 · 소병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 · 대여 · 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 전시 · 진열을 제한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해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만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유사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 · 대여 · 배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장치 대부분은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청소년이 위 · 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성인인증이 가능해, 구매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
· 대여 · 배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기계장치 및 무인판
매장치에서의 전시 · 진열은 청소년 출입 · 고용이 금지된 장소로 제한
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한 조치입니다(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제59조 및 제64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담배유사제품[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을 말한다), 유사니코틴(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원료나 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체내로 흡입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을 “주류, 담배 또는 담배유사제품(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담배유사제품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대여·배포하는 자

⑪ 담배유사제품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판매

· 대여 · 배포할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4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11항을 위반하여 담배유사제품을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판매 · 대여 · 배포할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제59조제6호 중 “제2조제4호가목1) · 2)”를 “제2조제4호가목1) · 2) · 2)의2”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7호의2”를 “제7호의2 · 제7호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4. ----- ----- ----- ----- ----- -----.
가. 청소년유해약물	가.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담배유사제품[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을 말한다), 유사니코틴(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u>

3) ~ 5) (생략) 나. (생략) 5. ~ 8. (생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u>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u>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	<u>것으로서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원료나 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체내로 흡입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3) ~ 5)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5. ~ 8. (현행과 같음)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주류, 담배 또는 담배유사제품(이하 “주류등”이라 한다)</u>을----- ----- ----- ----- ----- ----- -----
--	--

소는 제외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⑥ ~ ⑩ (생 략)

<신 설>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 2. (현행과 같음)

3. 담배유사제품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대여·배포하는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담배유사제품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할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45조(시정명령) ① -----

-----.

1. ~ 7의2. (생략) <u><신설></u> 8. (생략) ②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u>제2조제4호가목1)·2)의</u>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한 자 7. ~ 9. (생략) 제64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제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11항을 위반하여 담배유사제품을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할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조제4호가목1)·2)·2)의2----- ----- ----- ----- ----- ----- ----- 7. ~ 9.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
---	---

1호 · 제2호 · 제7호 · <u>제7호의2</u> · 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③ (생 략)	----- <u>제7호의2</u> · <u>제7호의3</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